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9월 8일, 이성윤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9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9.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14.)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16.)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9.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성윤의원)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에서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법원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된 것과 달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형사사건의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법원은 「군사법원법」의 특수성으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 중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법원을 정비하는 경우에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 따를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의겸위원)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수정이유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되는 것)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고소권자는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개정안의 관할법원을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 가. 재정신청사건 관할법원을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 나. 시행일을 2027년 2월 5일로 수정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함(안 부칙 제2조 신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그 검사 소속의 광역공소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각 호를 신설한다.

1.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2.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서
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u>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u>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 ----- ----- ----- ----- ----- ----- <u>그 검사 소속의 광역공소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u> ----- ----- ----- ----- ----- ----- ----- <u><신 설></u>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 ----- ----- ----- ----- ----- -----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u> ----- ----- ----- ----- ----- ----- ----- --. <u>1.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u>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u>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광역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u>	<u>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u> <u>2.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u> ② (개정안과 같음)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u>
---------------	---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2.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군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u>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u> 대응하는 <u>고등법원에</u>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u><신설></u> <u><신설></u>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 ----- ----- ----- ---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u>----- ----- ----- -----. 1. <u>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u> 2. <u>군검사로 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